



## 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 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내국인과 동일 수준(대학 3학년 이상)으로 개선
- 국내 소외지역 학생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온라인 교육산업 활성화 촉진

□ 규제심판부는 5.31(수)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고동수(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장), 노경란(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광현(고려대 노사관계학과 교수), 방민석(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재정(법무법인 민 고문, 서면참여)

○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우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 영국 리서치업체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디지털 외국어교육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6년 16조 3,000억원에 이를 전망

○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Naonow(美) △Cambly(美) △Preply(美) △NativeCamp(日) 등 한국 서비스 중

○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21.7월)한 바 있다.

□ 규제심판부는 △지방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와함께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 (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한편,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 △비자(E-2) 사본 제출 → 자국민 확인증명서 대체, △외국인 등록증 제출 → 면제

□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심판부 권고는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강사의 학력요건을 현행 대학 졸업이상에서 내국인과 같은 전문대졸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으로 개선할 것
- 학원들이 외국인 강사 채용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검증을 엄격히 실시토록 하고 부적격 강사의 퇴출을 위해 자율적인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유도할 것
- 외국 현지에 있는 원어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할 것

- 교육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하여, 학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학원강사 학력기준

[참고2] 외국인 강사 제출서류 관련 규정

|      |          |     |     |                    |
|------|----------|-----|-----|--------------------|
|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정동혁 (044-200-2563) |
|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이정호 (044-200-2559)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현행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구분           | 자격기준  |
|--------------|---|
| 학교교과<br>교습학원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br>2. <b>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b><br>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br>6. <b>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b><br>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br>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br>9. <b>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b> 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b>해당 체류자격</b> 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b>활동허가</b> 를 받은 사람 |
| 평생직업<br>교육학원 | 1. <b>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b><br>2. <b>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  |

**학원강사 자격 요건 연혁**

| 종류                       | 내국인                              | 외국인     |
|--------------------------|----------------------------------|---------|
| 1996년 이전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 1996.1.1. 개정             | 대학졸업이상                           |         |
| 2004.6.5. 개정<br>(내국인 완화)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 이상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 없이 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하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